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84,542,941	62,536,288
일반회계	1,636,998,948	49,109,968
특별회계	447,543,993	13,426,320
공기업특별회계	241,323,135	7,239,694
상수도사업	73,308,577	2,199,257
하수도사업	168,014,558	5,040,437
기타특별회계	206,220,858	6,186,626
공유재산관리	52,941,728	1,588,252
의료급여기금	9,417,596	282,52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718,555	21,557
교통사업	77,664,273	2,329,928
철도건설사업	3,245,673	97,370
폐기물처리시설	5,625,455	168,764
도시재정비촉진	1,326,658	39,800
도시개발	16,110,000	483,300
공공시설등 설치	62,755	1,883
문화시설건립	30,228,000	906,840
도시재생	8,880,165	266,40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565,846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14,611,696천원
-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 (3) 내부유보금 3,954,150천원

제 7 조 202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